모욕·폭행

[대법원 2018. 4. 10. 2018도1736]



【판시사항】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공2001상, 1300),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88 판결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인천지법 2018. 1. 11. 선고 2017노3403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 원심이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